상호금융권
국민체감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

2019. 7. 4

금 융 위 원 회

금 융 감 독 원

목 차

Ⅰ. 추진 배경 ····· 1

1. 상호금융권 현황 ····· 1

2. 개선 필요사항 ····· 2

Ⅱ. 국민체감형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 ····· 3

1. 국민체감형 금융서비스 개선 방향 ····· 3

2. 개선방안 ····· 4

가. 상호금융권 출자금·배당금 지급체계 구축 ····· 4

나. 상호금융권 예·적금 금리산정체계 개선 ····· 6

다. 상호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제도 정비 ····· 8

Ⅲ. 향후 추진일정 ····· 10

<별첨 1> 상호금융권 미지급 출자금·배당금 환급 서비스 개요 ···· 11

<별첨 2> 「내 계좌 한눈에」 서비스(“어카운트 인포”) 개요 ····· 12

<별첨 3> 중도해지이율·만기후 이율 상품설명서 개선안 ····· 13

<별첨 4> 상호금융권 채무조정제도 개선 주요 내용 ····· 14

Ⅰ. 추진 배경

1 상호금융권 현황

□ 상호금융조합은 그동안 지역경제 발전 등에 힘입어 괄목할 만한 성장세 시현

○ '19.3월말 현재 **총자산**은 **688조원**으로 '01년말(185조원) 대비 **3.7배** 규모로 **확대**(동 기간 **수신은 145조원**에서 **593조원**으로 4.1배 증가)

* 총자산(조원) : ('01말) 185→ ('10말) 401→ ('18말) 670→ **('19.3말) 688**
총수신 : ('01말) 145→ ('10말) 334→ ('18말) 574→ **('19.3말) 593**
총여신 : ('01말) 83→ ('10말) 230→ ('18말) 460→ **('19.3말) 464**

○ 아울러, **공동유대**를 **기반**으로 **조합원***과 **지역사회 이용자**의 **경제적·사회적 지위향상** 및 **금융편의 제공**에 **기여**

* 조합원수(만명) : ('01말) 2,614→ ('10말) 3,324→ ('18말) 3,669→ **('19.3말) 3,669**

□ 또한, 상호금융조합은 **지방소재*** **저신용자****(신용등급 7~10등급)가 많이 이용하는 **'지역·서민 밀착형' 금융기관**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

* 지방(서울·경기·인천 제외) 차주 대출비중(%) : <상호> 63, <은행> 35, <저축> 18

** 저신용자(7 ~ 10등급) 대출 현황(가계·개인사업자 대출)
- 대출규모 (조원) : <상호> 35, <은행> 27, <저축> 10, <여전> 16

○ 특히, **저신용자**(7~10등급) **1인당 채무금액***이 여타 업권 대비 크게 나타나는 등 **'관계형 금융'**에 **특화**

* 저신용자 1인당 채무 현황(가계·개인사업자 대출)
- 대출규모 (백만원) : <상호> 164, <은행> 67, <저축> 55, <여전> 32

총자산·총수신·조합원수('19.3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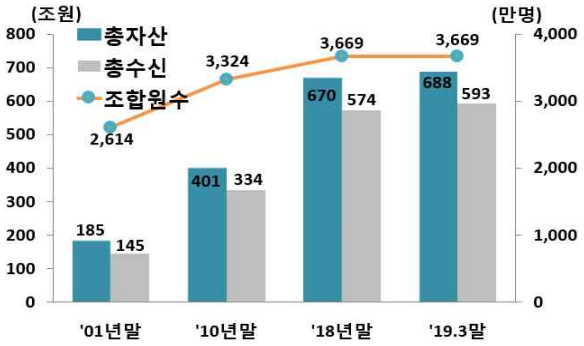

저신용자 대출 및 지방대출 비중('19.3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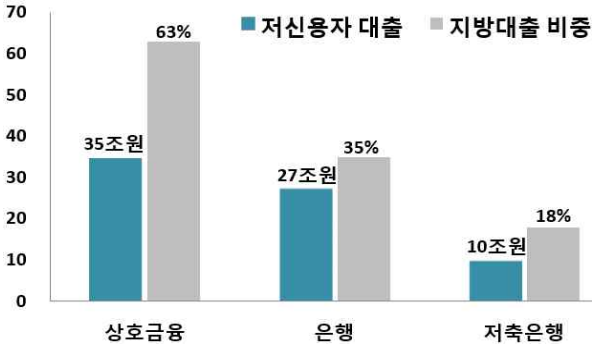

* 저신용자 대출(가계·개인사업자, NICE 자료), 지방대출(서울·경기·인천 제외, 한국은행 자료)

2 개선 필요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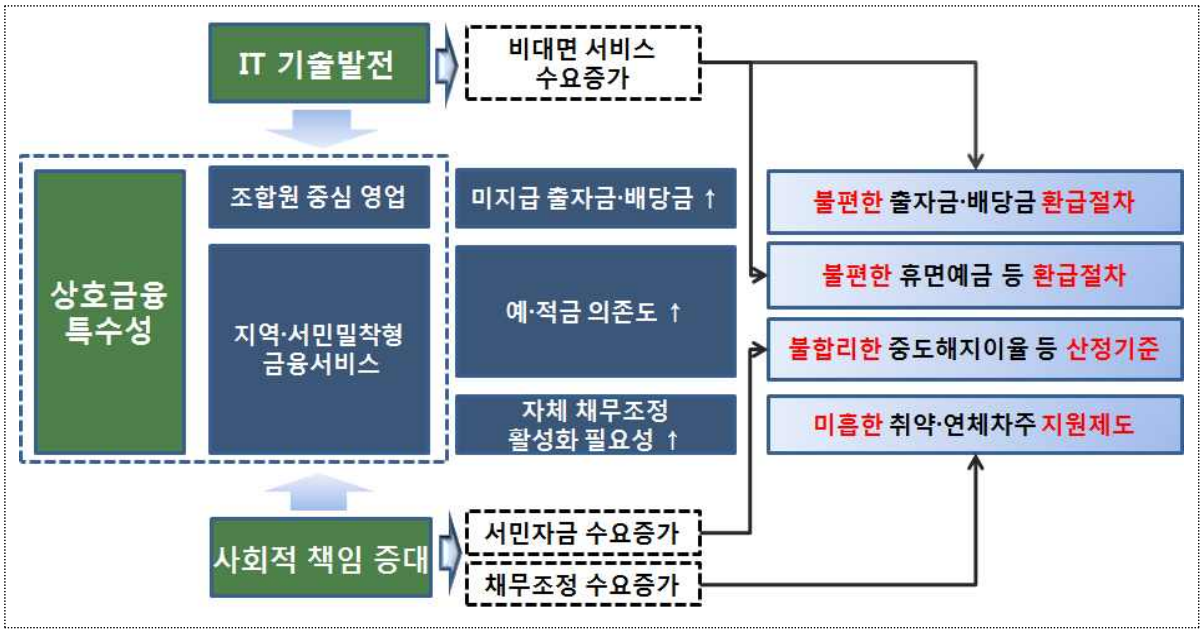

□ 그간의 **양적 성장**에도 불구하고 상호금융권의 **금융서비스는 금융환경 변화***에 **효과적**으로 **대응**하기 **미흡**한 측면 존재

* IT 기술 발전 → 모바일 앱 등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
사회적 책임 증대 → 긴급 생활자금·채무조정 수요 증가

❶ **(불편한 환급절차)** **출자금·배당금** 환급 및 **장기 미거래 예금** (휴면예금 포함) 인출시 **점포를 방문**해야 하는 **불편** 초래*

* 예)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한 비대면 환급이 불가능

❷ **(불합리한 중도해지이율 등 산정기준)** **만기 이전**이나 **이후**에 **예·적금**을 **해지**할 경우 적용되는 **금리 산정기준**의 **합리성 부족***

* 예) 중도해지시 약정이율 대비 과도하게 낮은 이율 적용 등

❸ **(미흡한 취약·연체차주 지원제도)** 불가피한 사유로 **채무상환**이 **어려운 차주**를 위한 **자체 채무조정제도**가 **사실상 부재***

* 예) 만기연장 위주의 단편적 지원에 치중되고 지원실적도 미미한 수준

Ⅱ. 국민체감형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

1 국민체감형 금융서비스 개선 방향

□ 상호금융권의 이용자(조합원, 예금자, 채무자)가 ①**보다 편리**하고, ②**합리적인 혜택**을 누리면서 ③**경제적 어려움**을 **극복**할 수 있도록 **'국민체감형 금융서비스' 활성화 방안**을 마련

❶ **편리한 금융** : **조합원** 및 **예금자**가 **모바일 앱** 등을 **활용**하여 **손쉽게 출자금·배당금·예금**을 **환급**받을 수 있는 **환경 구현***

* 미지급 출자금·배당금 및 장기 미거래 예금의 즉시 이체서비스 도입 등

❷ **넉넉한 금융** : 긴급한 **생활자금**에 **보탬**이 될 수 있도록 예·적금 **중도해지이율 등** 산정체계 **합리적 개선***

* 예·적금 가입기간을 감안한 중도해지이율 산정체계 마련 등

❸ **따뜻한 금융** : '채무조정제도 운영기준'을 마련하여, **단계별·체계적 자체 채무조정 지원체계 구축***

* 업권 공통의 최소 원리금 감면폭 도입, 채무조정채권 건전성 분류기준 정비 등

2 개선방안

가. 상호금융권 출자금·배당금 지급체계 구축 : 조합원 지원

(1) 현 황

□ '19.3월말 현재 상호금융조합의 조합원이 찾아가지 않은 **출자금·배당금**은 **총 1,574만 계좌, 3,682억원***

* 계좌당 미지급 금액(평균 2.3만원) : (출자금) 5.9만원 (배당금) 1.3만원

○ 이는 **조합원이 소액의 출자금·배당금**을 찾아가기 위해 **조합을 재차 방문**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고

○ 조합입장에서도 **탈퇴 조합원**의 **주소지·연락처 파악**이 **쉽지 않아, 미지급 출자금·배당금 환급안내**에 어려움이 있는데 기인

'19.3말 현재 상호금융권 미지급 출자금·배당금 현황

구분	신협	농협	수협	산림	새마을	합 계
계좌수(만개)	364.2	764.9	6.6	7.9	430.0	1,573.6
금액(억원)	736	2,008	154	77	707	3,682

※ 상호금융 조합원 출자금·배당금 환급 관련 사례

- 소액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싶었으나, 생업에 바빠 신경을 쓰지 못했으며, 좀 더 쉽게 출자금이나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음 (관악신협 ○○ 조합원)

- 탈퇴 조합원이 미지급 출자금·배당금을 찾아가도록 매년 우편으로 안내하고 있으나, 주소 이전 등으로 반송되는 사례가 많아 안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(관악신협 ○○ 계장)

(2) 개선 방안

□ IT, 공공정보 등을 활용하여 상호금융 조합원이 찾아가지 않은 출자금·배당금을 적극 환급

❶ 조합원이 조합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**본인이 조합원**으로 **가입한 전 상호금융 조합의 출자금·배당금을 일괄 조회**하고 **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전산체계 구축** (금융결제원 "어카운트 인포" 개선, '19.12월)

* 데스크탑 컴퓨터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서비스 제공 예정

- (조회) **조합원은 금융결제원의 "어카운트 인포" 서비스에 접속**하여, **본인**이 **조합원**으로 **가입한 모든 상호금융조합**의 **미지급 출자금·배당금 현황을 일괄 조회** ('18.12월 기구축)

* 어카운트 인포 접속 방법 :
데스크탑 : 인터넷 홈페이지 www.accountinfo.or.kr 접속→「내 계좌 한눈에」→「계좌통합조회」→「저축은행·상호금융·우체국」
스마트폰 앱 : 스마트폰에서 '어카운트 인포' 앱 접속→「내 계좌 한눈에」→「계좌조회」→「저축은행·상호금융·우체국」

- (이체) **조회**된 미지급 출자금·배당금을 **조합원 본인의 계좌** (상호금융권 포함 전 금융권)**로 이체**하는 서비스 제공 ('19.12월*)

* 다만, 농협은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'20.6월까지 농협간 이체만 가능하며, '20.6월 이후에는 전 금융권으로 이체가 가능

- (기부) **조합원 본인이 원할 경우**, 조회된 **미지급 출자금·배당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**할 수 있음

※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하면 세법상 공제한도 내(10~30%)에서 세제 혜택 제공(기부내역은 추후 국세청 홈페이지 통해 조회 가능)

❷ 상호금융조합이 **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활용**하여 **탈퇴 조합원의 주소지 확인 후 적극적으로 환급절차를 안내** (금융위 심사·행안부 승인 후 최신 주소지로 안내우편 발송, '19.9월)

< 기대 효과 >

◈ **상호금융에서 출자금·배당금을 찾아가지 않은 조합원** (계좌수 기준 1,573.6만명)**이 보유한 총 3,682억원 규모의 미지급 출자금·배당금의 환급**이 **원활히 이루어질 것**으로 기대

나. 상호금융권 예 · 적금 금리산정체계 개선 : 예금자 지원

(1) 현 황

□ **(중도해지이율)** 정기 예·적금 중도해지*시 가입기간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됨

* '18년중 상호금융권 정기 예·적금 중도해지 금액 : 55조원 (중도해지이자 : 1,200억원)

** 중앙회 업무방법서상 **중도해지이율 산정식**이 **없어** 개별 조합이 통일된 기준없이 임의로 중도해지이율을 산정

○ ①예·적금 **가입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중도해지이율**을 적용하거나, ②**만기에 근접**하여 해지해도 **약정이율의 50%미만 지급***

* ① 단기가입 예금자보다 장기가입 예금자에게 낮은 중도해지이율 적용 : 54개 조합
② 정기예탁금(1년)을 만기 1달전에 해지해도 평균 약정이율의 33% 지급

□ **(만기후이율)** 정기 예 · 적금의 만기후 이율 산정과 관련된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 · 원칙이 미비

○ 정기예금과 적금은 만기가 도래한 이후에는 이율을 달리 적용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측면

만기후 시점별 이율수준(약정금리 대비 비율)

구분	~1개월	~3개월	~6개월	~12개월	~24개월	24개월~
정기예금	100%	50%	보통예금이율			
정기적금	50%					보통예금이율

○ 개별 조합이 임의로 만기후 이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음

* 예) A조합 : 만기후 3개월이내(약정이율의 10%), 6개월이내(약정이율의 5%)
B조합 : 만기후 3개월이내(약정이율의 20%), 6개월이내(약정이율의 35%)

□ **(정보제공)** 예금자가 예·적금을 가입할 때 교부받는 **상품설명서에 중도해지이율**이나 **만기후 이율**에 대한 **구체적인 설명 미흡***

* 예)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이율 : 단순히 '조합에서 고시한 이율에 따릅니다' 라고 명시

○ 예 · 적금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예금자에게 신속히 통보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음

→ 예금자가 본인의 예 · 적금 만기도래를 뒤늦게 인지하여 예금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

(2) 개선 방안

□ **상호금융 예·적금 금리 산정체계 합리화**(중앙회 업무방법서 개정, '19.7.8. 시행)

○ **(중도해지이율)** 예·적금 **가입기간을 고려한 중도해지이율 산정체계**를 도입하고, **가입기간별 지급이율 수준 명시**

- (금리산정체계) **예·적금 가입기간**이 **길어질수록 중도해지 이율**이 **상승**할 수 있게 **산정체계**를 **합리화***

* 만기에 근접하여 해지시 지급되는 중도해지이율을 현행대비 2배이상 상향될수 있도록 개선 (현행 : 약정이율 대비 30% → 개선 : 최고 80% 이상)

- (가입기간별 지급이율 명시) **중앙회 업무방법서**에 **가입기간별 지급이율**을 **명시**(예시)

* 개별조합은 중앙회의 예시를 참고하여 중도해지시 지급이율을 상향조정

○ **(만기후이율)** 상호금융조합의 만기후 이율 **지급구조**를 **정비**하고, **정기예금**과 **적금**간 **지급수준**을 **통일***

* 예) 농협 : (현행) 만기후이율 자율 결정
→ (개선) 6개월까지 약정이율 50% 지급(예금·적금 동일)

□ **예금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**

○ **(예금 가입시)** 예금상품 가입시 예금자가 중도해지 이율 및 만기후 이율을 **상품설명서**를 통해 **정확히 알 수 있도록 개선**
(상품설명서 개정, '19.7.8. 시행)

○ **(만기 도래시)** 예·적금 만기 도래시 예금자가 신속히 만기도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상호금융업권별 **고지 시스템 구축***
(중앙회 전산시스템 개선, '19.7.8. 시행)

* 예·적금 만기가 도래하기 7일전 SMS로 예금자에게 자동 통보

< 기대 효과 >

◈ 상호금융조합 예금자들이 **긴급자금이 필요**하여 **예·적금**을 **중도해지**할 경우 현행보다 **최대 574억원**(300만개 계좌)의 **혜택**('18년 기준, 1년 정기예·적금)**을 받을 것**으로 기대

◈ **예금자가 중도해지이율·만기후 이율 등에 대해 충분히 알고 가입**하며, **만기도래 사실 통보 등**을 통해 **효과적으로 예금자산을 관리**해 나갈 것으로 기대

다. 상호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제도 정비 : 채무자 지원

(1) 현 황

□ 경기회복 지연과 맞물려 **상호금융조합의 가계·개인사업자대출 차주의 상환능력이 저하***되고 있어 **채무조정 수요** 증가 예상

* 가계대출 연체율 : ('17말) 1.07% → ('18말) 1.20% → **('19.3말) 1.53%**
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: ('17말) 0.86% → ('18말) 1.31% → **('19.3말) 1.88%**

○ 특히, 상호금융권은 **저신용·단독채무자 대출***이 **많아 다중 채무자 중심의 신복위 채무조정**보다는 **자체 채무조정**이 **적합**

* 저신용(7~10등급) 단독채무자 대출 현황(가계·개인사업자 대출)
- 대출액(조원) : <상호> 10.3, <은행> 7.0, <저축> 2.9, <여전> 2.4
- 1인당 대출액(백만원) : <상호> 71.8, <은행> 31.3, <저축> 22.4, <여전> 9.5

□ 그러나, 상호금융권은 **취약차주**의 연체발생을 **사전예방**하고 **연체차주**의 **경제적 재기**를 지원하는 **채무조정 지원체계가 미흡**

❶ **(채무조정제도 실효성 부족)** 연체단계별 채무조정 **지원대상·기준** 등이 **체계적으로 정비***되어 있지 **않으며**

* 신협만 프리워크아웃제도 운영, 한시적 특별 프로그램 중심의 채무조정제도 운영 등

- **장기 연체자·사회 취약계층**(기초생활수급자, 중증장애인 등) 등에 대한 **원금감면기준*** 등도 마련되지 않아 **실효성이 낮음**

* '18년중 농협.수협.산림 상각채권 평잔(12,977억원) 대비 원금감면(255억원)은 2.0%

❷ **(채무자 홍보 부족)** 상호금융조합이 채무조정제도를 **알리지 않아** 재무적 곤경에 처한 차주가 **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**

❸ **(조합의 유인 부족)** 채무조정후 성실상환자에 대한 **자산건전성 상향조정 근거**가 **미흡**하여 조합이 **채무조정**을 **적극 추진**할 **유인 부족**

- 자산건전성 상향은 가계대출만 가능하므로 **개인사업자대출로 확대 필요**

※ 상호금융 자체 채무조정 제도 정비 관련 사례

- 재개발지역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나, 재개발이 10년 이상 지연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, 위암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었음
  - 당시 신협 외 타금융기관의 모든 대출이 연체되었으나 신협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여 대출기한 연장 및 이자상환 주기 변경(1개월→3개월)이 가능하여 대출을 모두 상환할 수 있었음 (○○ 신협 채무조정 이용자)

(2) 개선 방안

□ **(채무조정제도 실효성 제고)** 상호금융권의 단계별·체계적 자체 채무조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 등 지원 강화
(중앙회 업무방법서 개정, '19.7.31. 시행)

❶ **(채무조정 지원체계 정비)** ①연체발생 전 취약차주·연체우려자, ②단기 연체자(연체 3개월 미만), ③장기 연체자(3개월 이상)별로 채무자 상황에 맞는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마련

* ①연체발생전 : 불가피한 일시적 자금난 발생시 원금상환 유예, 연체우려자에 대해 연체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 안내 등
②단기연체(프리워크아웃) : 연체이자 감면, 이자율 인하 등
(현재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은 신협만 운영 → 전 상호금융권으로 확대)
③장기연체(워크아웃) : 상각채권 원금감면(30~70%), 연체이자 감면, 이자율 인하 등

❷ **(채무조정 지원방식 다양화)** 채무 상환기간 연장 등 단편적 지원방식에서 벗어나, 채무자 상황에 맞게 ①일시상환대출의 분할상환 대환, ②장기연체자 원금감면 조치 등 다양한 방식 지원

❸ **(취약계층 등 지원 강화)** 중증장애인·기초생활수급자·노령층 등에 대해서는 원금감면 폭 확대 등 우대 지원

* 장기연체(워크아웃)시 최대 90%까지 원금감면

□ **(채무조정 프로그램 안내)**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 정보 제공
(중앙회 업무방법서 개정, '19.7.31. 시행)

❶ **(대출취급시)** 상품설명서, 중앙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

❷ **(연체우려·발생시)** 연체우려자 또는 연체자에 대해 문자메시지, 이메일, 서면 등을 통해 적합한 프로그램을 상세히 안내

□ **(조합의 채무조정 유인 강화)** 채무조정후 일정기간(최장 5년) 성실 상환시 자산건전성 상향(고정이하 → 요주의 → 정상) 분류 가능(중앙회 업무방법서 개정, '19.7.31. 시행)

○ **(건전성 분류 상향 대상 확대)** 가계대출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대출도 건전성 분류 상향 가능(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, '19.12월)

< 기대 효과 >

◈ 상호금융조합의 채무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최대 **14만 3천명***의 채무자가 경제적 재기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

* 연체우려·연체 3개월 미만 : 11.6만명, 연체 3개월 초과 : 2.7만명('19.3말, NICE 자료)

Ⅲ. 향후 추진일정

과제내용	기관	추진계획
1. 상호금융권 출자금·배당금 지급체계 구축		
- **주민등록 전산정보활용 출자금·배당금 환급 안내** (주민등록 전산정보 제공심사 요청 및 심사·승인)	금융위·금감원·행안부·상호금융중앙회	▸ '19.9월
- **미지급 출자금·배당금 지급 서비스 시행** (금융결제원 어카운트 인포 시스템 개선)	금융결제원	▸ '19.12월
2. 상호금융권 예·적금 금리산정체계 개선		
- **예·적금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이율 산정체계 개선** (상호금융중앙회 업무방법서 개정)	금감원·상호금융중앙회 (새마을금고)	▸ '19.7.8. (▸ '19.10월)
3. 상호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제도 정비		
- **채무조정제도 실효성 제고** (상호금융중앙회 업무방법서 개정)	금감원·상호금융중앙회	▸ '19.7.31.
- **채무조정 프로그램 안내** (상호금융중앙회 업무방법서 개정)	금감원·상호금융중앙회	▸ '19.7.31
- **조합의 채무조정 유인 강화**		
· **고정이하 대출 건전성 분류 상향 기준 신설** (상호금융중앙회 업무방법서 개정)	금감원·상호금융중앙회	▸ '19.7.31
· **건전성 분류 상향 대상 개인사업자대출로 확대** (상호금융 감독규정 개정)	금융위	▸ '19.12월

별첨 1 상호금융권 미지급 출자금·배당금 환급 서비스 개요

1 미지급 출자금·배당금 통합조회 서비스('18.12월~ 기 제공중)

○ **(이용방법)**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「파인」(fine.fss.or.kr) 또는 「어카운트 인포」 홈페이지*(www.accountinfo.or.kr)에 접속한 후

* 모바일앱(어카운트 인포)을 통해서도 이용가능

- 「내 계좌 한눈에」→「계좌통합조회」→「저축은행·상호금융·우체국」을 선택하면 상호금융권 미지급 출자금·배당금 조회가능

○ **(인증방법)** 공인인증서·휴대폰 인증(모바일 앱은 간편번호로 인증 가능)

○ **(제공정보)** 배당기준일 현재 배당금 잔액, 조합 탈퇴일 현재 출자금 잔액, 계좌 개설일 및 해지일, 조합 지점명 및 전화번호

2 미지급 출자금·배당금 지급 서비스('19.12월 개시예정)

○ **(현황)** '16.12월부터 「내 계좌 한눈에」의 「잔고이전·해지」 메뉴를 통해 은행권 **소액·비활동성 계좌*** 잔고이전·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

* 50만원 이하,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

- **제2금융권***('19.8월) 및 **증권사**('19.10월) 소액·비활동성 **예금계좌 대상**으로 서비스 확대예정

* 상호금융(신협·농협·수협·산림조합·새마을금고), 저축은행, 우체국 등

○ **(개선)** 「내 계좌 한눈에」를 통해 조회한 상호금융조합 미지급 출자금·배당금도 잔고를 이전할 수 있도록 서비스 구축('19.12월)

별첨 2 「내 계좌 한눈에」 서비스("어카운트 인포") 개요

【 금융계좌 조회 】

□ **(이용방법)** 금융소비자정보포털 「파인」(fine.fss.or.kr), 「내 계좌 한눈에」 홈페이지(www.accountinfo.or.kr), 모바일 앱으로 이용가능

□ **(제공정보)** 개인의 은행·저축은행·상호금융의 예금계좌, 보험계약, 대출내역, 카드발급 정보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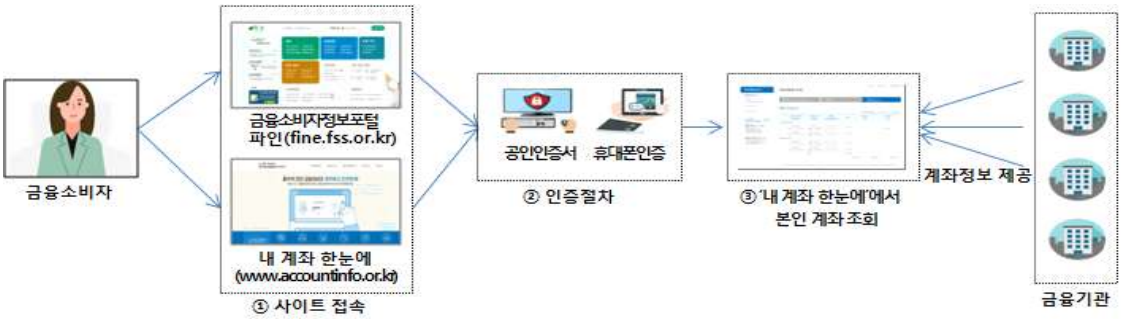

'내 계좌 한 눈에' 제공정보

구 분	정보유형	세부내용
은행 서민금융기관	본인계좌를 금융기관별, 활동별, 상품유형별로 구분하여 정보 제공	금융기관명, 지점명, 계좌번호, 상품명, 개설일, 최종입출금일, 잔고 등
보 험	정액형보험, 실손형보험으로 구분하여 보험가입정보 제공	보험회사명, 상품명, 계약상태, 보장 시작.종료일, 피보험자정보
대 출	대부업체를 제외한 모든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정보	대출기관명, 대출 종류, 발생일자, 대출금액
신용카드	본인이 발급받은 유효 카드의 보유현황, 사용내역, 포인트 정보	카드사별 보유카드개수, 이용한도, 카드상품명, 종류, 결제예정금액, 최근이용대금명세, 포인트

【 계좌이전·해지 】

□ 금융소비자는 **소액·비활동성 계좌**의 잔고를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에 **잔고 이전**하거나, **서민금융진흥원**에 **기부** 가능

< 서비스 흐름도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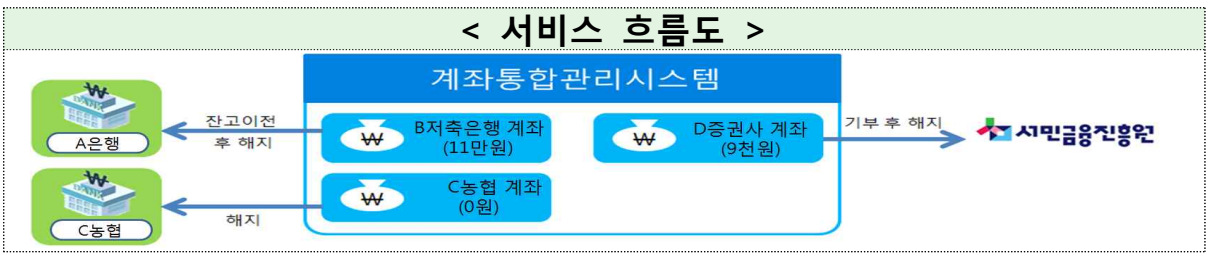

별첨 3 중도해지이율·만기후 이율 상품설명서 개선안

* 신협의 사례(정기예금 1년 만기 기준)

중도해지 이율

•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 적용

기간별 중도해지 구간	적용률	최저이율
1개월 미만	-	0.10%
1개월 이상~2개월 미만	기본이율 X (40%) X 경과월수/계약월수	0.30%
2개월 이상~3개월 미만	기본이율 X (50%) X 경과월수/계약월수	
3개월 이상~6개월 미만	기본이율 X (50%) X 경과월수/계약월수	0.50%
6개월 이상~9개월 미만	기본이율 X (55%) X 경과월수/계약월수	
9개월 이상~11개월 미만	기본이율 X (75%) X 경과월수/계약월수	
11개월 이상~12개월 미만	기본이율 X (85%) X 경과월수/계약월수	

1. 기본이율 :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이율(우대이율 제외)
2. 경과월수 : 입금일부터 해지전일까지의 월수로, 1개월 미만은 절상
3. 계약월수 : 최초가입시 약정한 계약기간의 월수로, 1개월 미만은 절상

[중도해지이자 계산방법]

• **예시1** : 기본이율이 2%인 1년 만기 정기예금을, 1개월 1일이 경과한 시점에 중도해지 할 경우, 2% X 40% X (2/12) = 0.13% 로 계산되나 최저이율보다 낮으므로 0.3%가 적용 (기본이율 대비 15.0%)

• **예시2** : 기본이율이 2%인 1년 만기 정기예금을, 11개월 1일이 경과한 시점에 중도해지 할 경우, 2% X 85% X (12/12) = 1.7%가 적용(기본이율 대비 85%)

☞ 위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히 계산한 것으로, 예금거래약정 체결 전에 미리 중도해지이율 계산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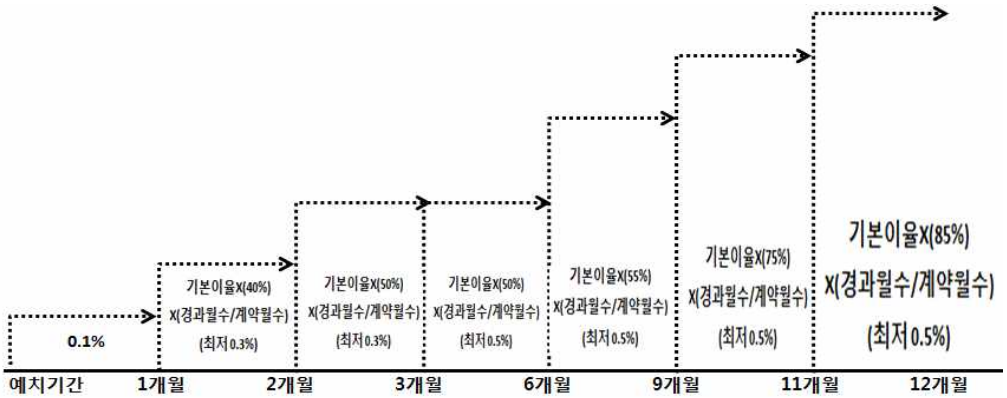

만기후 이율

•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율 적용

경과기간	이율
만기후 1개월 이내	기본이율 X 100%
만기후 3개월 이내	기본이율 X 33%
만기후 6개월 이내	기본이율 X 16%
만기후 6개월 초과	보통예금 이율

별첨 4 상호금융권 채무조정제도 개선 주요 내용

□ 채무조정제도 개선후 지원체계

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

불가피한 일시적 자금난	연체우려 (연체발생 전)	단기연체 (연체 3개월 미만)	장기연체 (연체 3개월 이상)
가계('18.11월 시행) 개인사업자('19.7월 시행)	미도입	신협만 운영중	채권보전 위주 보수적 채무조정제도 운영 (명시적인 워크아웃제도 부재)
① 일시상환대출의 분할상환으로 대환 ② 대환대출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③ 분할상환대출의 상환기간 연장 ④ 채무조정시 기존 대출보다 높은 이자율 적용 금지			
① 원금상환 유예* * 개인사업자중 부동산임대업자 제외 ※ 기 시행중인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채무조정 제도에 통합	① 정상이자 납부시 연체이자 감면 ② 이자율 최소 2%p 인하(하한 설정) ③ 채무변제순서선택권 부여 ④ 담보권 실행 6개월 유예		① (연체)이자 감면, 원금감면※ 30~70% ② 이자율 최소 2%p 인하(하한 설정) ③ 채무변제순서선택권 부여 ④ 원금상환 유예 ⑤ 75% 성실상환자 잔여채무 면책※ ⑥ 사회취약계층 원금감면※ 80~90% ※ 상각채권 대상
연체 사전예방		단기연체의 장기연체화 방지	장기연체자의 경제적 자활포기 예방 및 상환의지 제고

□ 채무조정제도 개선 세부내용

구 분	주요 내용
제도안내 및 선정절차	• **단계별 채무조정제도 안내** - (**대출취급시**) 상품설명서.중앙회 홈페이지, (**연체우려시**) SMS, 이메일, 서면 (**연체발생후**) SMS, 이메일, 서면,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 등 • **채무조정 심의 등** - 개별 조합은 '**채무조정 심의위원회**'를 구성하여 30일 이내에 채무조정 승인여부 심의(1회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) → 자체 채무조정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채무조정 방법 안내
세부 지원방법	• **공통 :** 일시상환대출의 분할상환으로 대환, 중도상환수수료 면제, 분할상환 대출의 상환기간 연장, 채무조정시 기존 대출보다 높은 이자율 적용 금지 • **취약차주 지원 :** 원금상환 유예(개인사업자 차주중 부동산임대업자 제외) • **프리워크아웃** - 프리워크아웃 개시 전일까지의 정상이자 납부시 연체이자 감면 - 이자율 최소 2%p 인하(이자율 하한 설정), 채무조정후 1/2 이상 성실 상환시 이자율 추가 인하, 채무변제순서선택권 부여, 담보권 실행 6개월 유예 • **워크아웃** - 원금상환 유예, 이자율 최소 2%p 인하(이자율 하한 설정), 채무조정후 1/2 이상 성실상환시 이자율 추가 인하 가능, 75% 성실상환자 잔여 채무 면책(채무조정당시 상각채권) - 정상이자.연체이자 감면, **원금 30~70% 감면,** 채무변제순서선택권 부여 • **사회취약계층 : 원금감면 최대 80~90%**